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공제조합 영업점 집기비품 구입 및 설치』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조합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5. “입찰가격”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제조합 영업점 집기비품 구입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방법)

- 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도의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른다.
- ②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③ 제안서의 내용 및 관련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하거나 제안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조합 본부 및 영업점 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정한다.
- ⑥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안조건 등 제안서의 내용과 평가위원이 기술한 의견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 ①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 ①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 ②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협상성립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